

특별조사 결과

부서명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운영지원과	<p>○ 대상자 : 문화체육관광부 ○○과 A, 국립○○관 ●●과 B</p> <p>○ 문화체육관광부 ○○과 A는 2021. 7. 27. 같은 과 B(현재 국립○○관 ●●과)으로부터 재물조사를 위한 물품창고 출입을 명목으로 공무원증을 대여받아 물품창고, 정부청사 15동 스피드게이트를 출입하였고, B는 A으로부터 물품창고 출입문 개방을 요청받았으나 업무회의를 이유로 동행하지 않고 자신의 공무원증을 A에게 대여해 주었음</p> <p>⇒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징계(경징계)” 의결 요구</p>

붙임: 처분요구서 1부

문화체육관광부

징계요구

제 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공무원증 부당 대여 및 사용) 위반
소 관 실 국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관 계 기 관
징계 대상 자 문화체육관광부 ○○과 A
국립○○관 ●●과 B
징 계 사유

1. 사건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과 A는 2021. 7. 27. 같은 과 공업주사 B(현재 국립○○관 ●●과)으로부터 재물조사를 위한 물품창고 출입을 명목으로 대여받은 공무원증으로 정부청사 15동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출입을 시도하던 중 ◇◇본부 청사보안 담당직원에게 적발되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59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폐용)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2항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3. 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A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과 A는 ○○과 물품관리 담당자로서 2021. 7. 27. 재물 조사를 위해 물품창고(14동 3층) 출입이 필요하였으나, 본인의 공무원증으로 개방이 되지 않아¹⁾ 창고 개방이 가능한 같은 부서의 B 또는 C와 동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B는 업무 관련 회의²⁾를 진행하고 있었고, ▲C는 연가 중이어서, B의 공무원증을 대여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자신의 공무원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³⁾ 지하층(물품창고, 소산시설) 재물조사⁴⁾를 위해 정부청사 15동 스피드게이트를 B의 공무원증으로 통과(당시 본인의 공무원증은 사무실에 두고 B의 공무원증 사용)하고 지하층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완료하였고, 이후 정부청사 14동 3층에 있는 물품창고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정부청사 15동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면서 B의 공무원증을 재차 사용하던 중 ◇◇본부 청사보안 담당직원에게 적발되었다.⁵⁾

나. B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과에 재직 당시 B는 물품창고 출입권한이 부여된 공무원증을 소유하고 있어 평소 A가 물품창고 방문 시에는 직접 동행하거나 동일한 출입권한이 있는 C에게 동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재물조사 당일(2021. 7. 27.) B는 A가 재물조사 용역업체 직원들과

1) 평소에는 동 창고 출입 시 같은 과 B 또는 C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됨

2)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관련 회의(○○과 D, E, B)

3) A은 당초 재물조사를 4층에서 지하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재물조사가 지체되어 지하 소산시설 개방 해주기로 약속한 시간(15시 경)에 임박하여 재물조사 용역직원을 2개 조로 나누어 급하게 지하로 이동하면서 자신의 공무원증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였고 B의 공무원증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소산시설은 보안시설로 비상안전기획관실 담당직원이 직접 개방해 주어야 함

4) 지하층에 있는 창고에서도 재물조사를 하였으나, 동 장소는 공무원증이 아닌 열쇠로 개방할 수 있게 되어있어 B의 공무원증을 사용하지 않았음

5) 이후 B의 공무원증으로 물품창고(14동 3층) 개방 후 사무실로 복귀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업무회의 중이었고, C는 연가 중으로 물품창고 개방을 위해 동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자신의 공무원증을 A에게 대여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정적하게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요구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운영지원과장은 공무원증을 잘못 대여·사용한 아래의 관련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문화체육관광부 ○○과 A

국립○○관 ●●과 B